



2022년 3월 2일(517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군정방침 ◇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자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 표 전 화 061)530-5321팩스 530-5574 홈 페 이 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공고·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 lefton | 해남군 | 조례 | 제3116호 | 2 |
|--------|-----|----|--------|--------|
| • | 해남군 | 조례 | 제3117호 | 7 |
| • | 해남군 | 조례 | 제3118호 | 14 |
| • | 해남군 | 조례 | 제3119호 | 24 |
| • | 해남군 | 조례 | 제3120호 | 31 |
| • | 해남군 | 조례 | 제3121호 | 37 |
| • | 해남군 | 조례 | 제3122호 | 55 |
| • | 해남군 | 조례 | 제3123호 | 59 |
| • | 해남군 | 조례 | 제3124호 | 64 |
| • | 해남군 | 조례 | 제3125호 | 68 |
| • | 규칙 | | | |
| • | 해남군 | 규칙 | 제1345호 | 73 |
| | 공고 | | | |
| • | 해남군 | 공고 | 제13호 | 77 |

조 례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조례 제3116호

붙임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 | 성명 | 생년월일 | [] 대 | 표자 |
|-----------------------------------|--------|-------------------------|------------------|-----------------|
| 의견제출인 | | (성별) | ※ 공동 의견 경우 √표 | 년제출시 대표자(단시 |
|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 주소 | | | |
|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 전화번호 | | | |
| 경우 별지 사용 | 전자우편 | | |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대표자 인원 : | 명 |
| | | | | |
| 의견 | | | | |
| ※ 취지와 이유를 | | | | |
| 명확하게 밝혀 작성 | | | | |
| 참고자료 | | | | |
| ※ 필요한 경우 제출, | | | | |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 | | |
| 「지방자치법」 제20 항에 따라 위와 같0 |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건 니다. | 변 제출 등에 관한 조려 | 」 제5조제1 |
| | | | 년 | 월 일 |
|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 | | | | |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조례 제3117호

붙임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남군(이하"군""을 "해남군(이하 "군""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남군수(이하"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제1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체) ① 군수는 각종 인구정책의 제안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늘리기 협 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협의체 위원은 농업, 청년, 주민자치, 도시재생 전문가 및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군민과 관계공무원, 군의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행 혀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정의) ---------- 다음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 이란 해 | 1. ----- 해남군 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이하 "군" ------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 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 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해남군수(이하 제3조(지원내용) 해남군수(이하 "군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 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 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에 관한 조례」-----지원 6. (현행과 같음) 6. (생략) 7.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 7.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 례」에 따른 귀농ㆍ귀어 지원 원 조례」-----

8.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대상 | 및 | 기준) | 1 | (생 |
|----------|---|-----|---|----|
| 략) | | | | |

-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와 지원을 받고 건출 후 5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③ (생략)
-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② <u>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u>와 같다.
 - 1. ~ 4. (생략)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현 |
|---------------------|
| 행과 같음) |
| ② |
| |
| |
| |
| |
| 않는다. |
| 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 |
| |
| 제2호서식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
| 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

에서 호선 한다.

- ② (생략)
- ③ 위촉직 위원은 <u>양성평등기본</u>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 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 1. ~ 3. (생략)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⑥ (생략)

<u><신 설></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양성평등기 |
| 본법」 제21조제2항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4 |
| |
| |
| 한 차례 |
| |
| |
| |

(5)·(6)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체) ① 군수는 각종 인 구정책의 제안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늘리기 협의체(이 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하는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 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제13조(시행규칙)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은 농업, 청년, 주민자치, 도시재생 전문가 및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군민과 관계공무원, 군의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 <u>제10조</u> (예산확보 및 지원) | |
|-------------------------|--|
| | |
| 범위 | |
| . | |
| | |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 관한 -----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18호

붙임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남군"을 "해남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군"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육비 등을 지원한 산모"를 "등록 임신부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임신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중 "모자보건법 제10조"를 "「모자보건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 5. 기저귀 구입비 지원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은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관리 임산부에게 예산 범위에 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은 부 또는 모가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루고 있는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으로 예산 범위에서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둘째아 이상"을 "]"로, 같은 서식 중 "(※"를 "(2022. 1. 1.이후 출생자)"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해남군"을 "전라남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자보건증진 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등록관리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 및 입양아 가정부터 적용한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현행>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색상0 | 어두운 닌 | 은 신청인 | 인이 작성하지 (| 아니하며, [|]에는 ㅎ | ∦당되는 곳○ | ∥ √표를 | 를 합니다. | | | |
|----------|--------------------------|---------|---------------|---|---------------------------------|---------------|--------------|----------|----------------------|-------------|----------|
| 접수반 | 호 | | 갑 | 접수일자 | | | | 처리기 | 기간 신청 4 | 시 별도안내 | |
| 신청인 | 성명 | | | 등록번호 | | 출 | 산자와 | | 휴대전화 | | |
| (대리 | | | (외국 | 인등록번호) | | | 관계 | | (집전화) | | |
| 신청인) | 주소 | | I | | | | | | | | |
| 출산자 | 성 | 명 | | | | 등록번호 등록번호) | | | 휴대전화 (집전화) | | |
| (산모) | 주 | | | | (4110 | 0724/ | | | (日 근 의 / | | |
| | (주민등록 | 주소지) | | | | | ※ 출산지 | 와 신청인이 | 동일인인 경 ' | 우 "출산자"란 작성 | 성 생략 |
| | 성 | 명 | | | | 등록번호 | | | 분만의료기관 | <u> </u> | |
| 신생아 | 군내거리 | 5기가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등록번호) 신고일 | 년 | 월 일 | 자녀수 | 자녀 중 | 째 |
| | | | | | | L-2 | | | | | -71 |
| | 세대주와 관계 | 성 | 명 | 주민등록번 국인등록변 | 1 <i>9</i>) 호 | 동거여 | 부 | ᄼᇄᇅᄅ | 주 <i>-</i> 다미制느 거 | | 71 711 \ |
| | 본인 | | (4 | 76076 | <u>:</u> | []예[] | 아니오 | (세대글 | 필디야는 경 | 우에만 주소 | 71/11/ |
| 가족 | 배우자 | | | | | [] 예[] | | | | | |
| 사항 | 자 | | | | | []예[] | | | | | |
| | 자 | | | | | []예[] | | | | | |
| | 자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신생아 양 | | (도비, | | | | | | |
| | | | [] 산모아기시 | | | 경지 주소(출생 | 생등록 당 | 당시 주소) : | | | |
| | 치단체 자처 5남 해남군 | 자체 급부 | | | | | | | | | |
| (, | 그러 에러스 | , | [] 다동이가정 | | | | | | | 아(이름: |) |
| | | | | | | 민등록을 둔기 | | | | 재아 이상(이름: | ´) |
| ᡓ | 공통 서비스 | _ | 출생자 | 성명 | | | | 신청 니 | 세용 | | |
| [] 양육 | 수당 지원 | | | |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 | | | | |
| | 급여 지급 거·의료수급 | | |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 | | | |
| | 키·의표구를 당애인 출산 | | | | | | | | | | |
| | 5에면 <u>물</u> 년 요금 경김 | | ※ 출생자 모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생자 모두 기재 [] 고객명 : 고객번호 : | | | | | | | |
| | | | [] 전기요금 | 겨간(고갠명 | | | !객번호 | |) | | |
| 다지 | ŀ녀(3명 이 | (상) | [] 도시가스의 | | | | -764 | 고객명 : | <i>,</i> 고객 | 번호 : |) |
| | 1 1(00 - | , | [] 지역난방외 | | | | .) : | 고객명 : | | - 번호 : |) |
| | | | 출산자와 | | | | | | _ | -11 | _ |
| 7.01 | 성 | 명 | 관계 | 대상서비 | | 금융기관명 | | 계좌번: | 호 | 참고사항 등 | 5 |
| 급여 계좌 | | | | | | | | | | | |
| 게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산급 | 급여는 압류빙 | J지통장 시 | 용 가능, 그 외 | 서비스는 일 | 반통장만 | 사용 | | | | | |
| | 과 통지 방 | 법 | [] 문자 메시 | 시지 서비스(| SMS) : 7 | 결정사항, 저 | l공기관 | 연락처 등 | 간단한 안내 | | |
| 위와 | 같이 출산 | 서비스를 | └ 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20 | 년 월 | 일 |
| | | | | | 신청 | 형인(대리 4 | <u></u> 신청인) | 성명 : | | (서명 또는 연 | 인) |
| 해 남 : | 군수 귀 | 하 | | | | | | | | | |
| | | | | | | | | | | | |
| <u> </u> | | - | | | | | | | | | |
| " Д | | | | | | | | | | | |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접수번 신청인 | | | | | | | │ | | | | |
|---------------------------------|--|--------------------------|--------------------------------------|---------------------------|------------------------------------|----------------------------------|----------|--------------|------------------|----------------------|------|
| 신청인 | 호 | | ; | 접수일자 | | | | 처리기 | 간 신청 시 | 별도안내 | |
| | 성명 | | | l등록번호 | | 출 | 산자와 | | 휴대전화 | | |
| (대리 | | | (외= | 인등록 번호) | | | 관계 | | (집전화) | | |
| 신청인) | 주소 | | | | | | | | | | |
| ᅕᆈᅱ | 성 | 명 | | | | 목번호 | | | 휴대전화 | | |
| 출산자 | 주 | 소 | | | (외국인 | 등록번호) | | | (집전화) | | |
| (산모) | (주민등록 | | | | | | ※ 출사지 | 나와 신청인이 | 동일인인 경우 | "출산자"란 작성 | 생리 |
| | 성 | 명 | | | 주민등 | 등록번호 | | | 분만의료기관 | | |
| 신생아 | 성 병 | | | | (외국인 | !등록번호) | | | 군인의표기원 | | |
| | 군내거주 | F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출생 | 신고일 | 년 | 월 일 | 자녀수 | 자녀 중 | 째 |
| | 세대주와 | 415 | | 주민등록번 | 호 | | н | | 주소 | | |
| | 관계 | 성당 | (오 | 국인등록변 | <u>년</u> 호) | 동거여 | 누 | (세대를 달 | 달리하는 경우 | 우에만 주소 기 | ' 재) |
| 가족 | 본인 | | | | | []예[] | 아니오 | | | | |
| 기 사항 | 배우자 | | | | | []예[] | | | | | |
| ~10 | 자 | | | | | []예[] | | | | | |
| | 자 | | | | | []예[] | | | | | |
| | 자 | | | | | []예[] = : | 아니오 | | | | |
| | | | [] 신생아 양 | | (도비, | | | | | | |
| エ ロトエL | 치단체 자처 | ᅵ크ㅂ | [] 산모아기/ [] 센째야 이 | | | ያ지 주소(출성 □ 지원 | 명당국 등 | 3시 구소) . | | | |
| | 시원세 시시 전남 해남군 | | | | | | | | | | |
| ,- | | | <u> </u> | | | | | |) 넷째아 | | |
| | | | 꺈쀼뫄 | 카67월이상 | 얼남돼 | 민동을 둔기 | 정) 다섯째 | 재아(이름: |) 여섯째 | 아 이상(이름: |) |
| | 공통 서비스 | | 출생자 | 성명 | | | | 신청 니 | ዘ용 | | |
| | 수당 지원 | |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 | | | | | | |
| | 급여 지급 | | |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 | | | |
| | 커·의료수급 | | |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 | | | | |
| _ | 장애인 출산 요금 경김 | | ※ 출생자 모두 | 기재 | [] 술선 | | (등독성 | 상애인) 고객번호 | | | |
|] [27] | | | · · | • | | | 711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요금 [] 도시가스: | | | | .객번호 | 고객명 : | <i>)</i> 고객번: | <u></u> ਨ · |) |
| -l 7l | 1511.352 VI | / <u>3</u> F | | 뜨ㅁ 성급(ㅗ | ~ ~ ~~ | | | | | | , |
| 다지 | 1 1(00 -1 | .0, | | | | | ١. | | | |) |
| 다지 | 1 (00 -1 | | [] 지역난방 | | | |) : | 고객명 : | 고객번. | |) |
| 다지 | 성 | | [] 지역난방 <u>:</u> 출산자와 | | 역난방사 | |) : | | 고객번. | |) |
| 급여 | | | [] 지역난방 | 요금 경감(지 | 역난방사 | 업자명(코드 |) : | 고객명 : | 고객번. | 호 : |) |
| | | | [] 지역난방 <u></u> 출산자와 | 요금 경감(지 | 역난방사 | 업자명(코드 |) : | 고객명 : | 고객번. | 호 : |) |
| 급여 | | | [] 지역난방 <u></u> 출산자와 | 요금 경감(지 | 역난방사 | 업자명(코드 |) : | 고객명 : | 고객번. | 호 : |) |
| 급여 계좌 | 성 | 명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 요금 경감(지 | 역난방사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 : | 고객명 : | 고객번. | 호 : |) |
| 급여 계좌 ※ 해산급 | 성 | 명 기통장 시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용 가능, 그 외 | 요금 경감(지 대상서비 서비스는 일 | 역난방사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사용 | | 고객명 : | 고객번. | 호 : |) |
| 급여 계좌 * 해산급 결과 | 성 급여는 압류병과 통지 방 | 명 /지통장 시 법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용 가능, 그 외 | 요금 경감(지 대상서비 서비스는 일 | 역난방사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사용 | | 고객명 : | 고객번. | 호 : |) |
| 급여 계좌 ※ 해산급 결과 | 성 급여는 압류병과 통지 방 | 명 /지통장 시 법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용 가능, 그 외 | 요금 경감(지 대상서비 서비스는 일 | 역난방사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사용 | | 고객명 : | 고객번. | 호 : 참고사항 등 | |
| 급여 계좌 * 해산급 결과 | 성 급여는 압류병과 통지 방 | 명 /지통장 시 법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용 가능, 그 외 | 요금 경감(지 대상서비 서비스는 일 | 역난방사 스 급 반통장만 : SMS) : 결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사용 결정사항, 제 | 공기관 | 고객명 : 계좌번호 | 고객번. | 호 : 참고사항 등 년 월 | 일 |
| 급여 계좌 ※ 해산급 결과 위와 : | 성 급여는 압류병 과 통지 방 같이 출산 | 명 정지통장 시 법 서비스를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용 가능, 그 외 | 요금 경감(지 대상서비 서비스는 일 | 역난방사 스 급 반통장만 : SMS) : 결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사용 | 공기관 | 고객명 : 계좌번호 | 고객번. | 호 : 참고사항 등 | 일 |
| 급여 계좌 ※ 해산급 결과 위와 : | 성 급여는 압류병과 통지 방 | 명 정지통장 시 법 서비스를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용 가능, 그 외 | 요금 경감(지 대상서비 서비스는 일 | 역난방사 스 급 반통장만 : SMS) : 결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사용 결정사항, 제 | 공기관 | 고객명 : 계좌번호 | 고객번. | 호 : 참고사항 등 년 월 | 일 |
| 급여 계좌 ※ 해산급 결과 | 성 급여는 압류병 과 통지 방 같이 출산 | 명 정지통장 시 법 서비스를 | [] 지역난방: 출산자와 관계 용 가능, 그 외 | 요금 경감(지 대상서비 서비스는 일 | 역난방사 스 급 반통장만 : SMS) : 결 | 업자명(코드 금융기관명 사용 결정사항, 제 | 공기관 | 고객명 : 계좌번호 | 고객번. | 호 : 참고사항 등 년 월 | 일 |



| - | • | |
|--------------|-----|-----|
| / 1H | ~ | · |
| < HH | _ | 1 ? |
| \backslash | · ` | ı / |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3.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 임신 | 무 가사 놀됨 | 류 서비스 신청서 | | | | | | |
|------------------|---|---|---|---------------------------------------|-----------------------|-------|-----------|--------------------------|
| 신 청 | 성 명 | | 생년 월일 | | 대상자 관계 | | | 접수 번호 2022- |
| · 인 | 주 소 | | | | 연락처 | | | |
| | 대상자 연 | · 인적사항 | | | | | | |
| 대 | 성 명 | | | | | | | 임 신 개 월 수 (출 산 예 정 일) |
| 상 자 | 생년월 일 | | | | | | | 개월 |
| | 주 소 | | | | | (| |) |
| 서 | 이 용 내 용 | 청소, 세탁 기본 파견) | <u>'</u> 서비스 및 식 | 식사제공 | 등 (1일 | 일 4시긴 | · / 4 | 회 가사 관리사 |
| 비스 | 이 용 기 간 | 2022년 월 *임신부등록 후 출 료) | 일 ~ 2022 산 전 날까지 지 | | 일 <u></u> 라후서비스 | 종 | ·자녀 여부 | □첫째아 □둘째 아 □셋째아이상 |
| 유 의 사 항 | 국적기준 (외국인 역가능) 결혼 이루 가족(배- | : 신청일 이전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임신부는 신청일 기준 주여성은 주민등록등 우자)신청 시 가족관 요한 증빙서류를 추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해남군 ·본에 등재 후 ·계증명서 추가 | 소유자 ² 에 주민등 신청 첨부 | | | | |
| 본 |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동의하며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20 | 년 | 월 | | 일 | | |
| | | | 신 청 | 인 : | | | (서명 | 또는 인) |
| | | | 관 | 계 : | | | | |
| | 해남군수 | - 귀하 | | | | | | |
| 구ㅂ | 미서류 | | | | | | | |
| 1. 신 | 〕분증 | | | | | | | |
| 2 4 | 스미돗록듯(초 |)보 (해정정보 공동 | 이용 동의 시 시 | H랴)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 | 제1조(목적) <u>해남군</u> |
| 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 | |
| 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 | |
| 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 |
|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 <u>해남군</u> 지역의 임산부와 어린이 | |
| 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 |
|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 | |
| 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 | |
| 처하고자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 | |
| 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 | |
| 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 |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 제2조(용어의 정의) |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u> | <u>다음과</u> |
| <u>호와</u> 같다. | |
| 1. "신생아 양육비"(이하 | 1 |
| "양육비"라 한다)란 <u>군</u> 에서 | 해남군(이하 "군" |
| 태어난 신생아 또는 12개월 | 이라 한다) |
|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 | |
| 하는데 지원해 주는 일정 금 | ·· |
| 액을 말한다. |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



(생략)

②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양육비 등 지 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생 략)

② <u>군수</u>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 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건강 보험 지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 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에 따라 청구한 다음달 15 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③ (생략)

제7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군수는 <u>양육비 등을 지원한 산</u> 모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증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

| (현행과 같음) |
|----------------------|
| ② |
| |
| |
| (|
| <u>(</u> 별ス <u>)</u> |
| <u>제1호서식)</u> |
| |
|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 |
| 으) |
|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 |
| 다)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제7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
| ① 등록 임신부 및 양육비를 |
| |
| <u> 지원하는 임산부</u> |
| |
| . |
| 1. 「모자보건법」 제10조 |
| |

리

- 2. (생략)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 스 또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u>예산</u> 범위 내에서 지원

<신 설>

<<u>선</u> 설> <신 설>

<신 설>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 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육 비 지원현황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과 건강보험료 지원현

| o (원웨키 카.Ŏ) |
|--------------------|
| 2. (현행과 같음) |
| 3 |
| |
| 예산범위 |
| |
| 4.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 |
| <u>원</u> |
| 5. 기저귀 구입비 지원 |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산부 |
|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은 신청 |
| 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군에 |
|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관리 |
| 임산부에게 예산 범위에서 가사 |
|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 |
| 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 |
| <u>다.</u> |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저귀 |
| 구입비 지원 사업은 부 또는 모 |
| 가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세대 |
| 를 이루고 있는 24개월 이하 영 |
| 아 가정으로 예산 범위에서 기 |
| 저귀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9조(대장 등 비치) |
| |
| |
| |

| 황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
| 을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
| 임신ㆍ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 |
|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
|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 |
| 다. |

제10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생 제10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현 략)

② 읍면장은 당월 출생・입양신 고 및 양육비 등 신청현황을 별 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별지 | 제4호서식) |
|-----|--------|
| | |

행과 같음)

| 2 | |
|---------|----------|
| | <u>별</u> |
| 지 제7호서식 | |
| | |
| | |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19호 붙임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1부.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가구" 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2. 질병 또는 부상 등 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4. 실직, 사업실패 등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6.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제4조(선정기준)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득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 하
 - 2. 재산기준: 법에서 정하는 재산기준의 100분의 150 이하
 - 3.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청 시 사실상 주거용 건물의 화재 피해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불에 탄 면적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위기가구 조사)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위기가구를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군수에 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읍·면장은 제3조제5호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신청할 수 있다.
 - ④ 읍·면장은 구호요청 시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출받아 불에 탄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읍·면장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내용) 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는 가구당 현금 100천원, 양곡 40 kg을 지급한다.
 -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화재 등 위기가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1.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 2. 전체 면적의 30-70퍼센트가 소실된 경우: 300만원
 - 3.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100만원 이하다만, 지원금은 소실된 피해금액만큼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4. 화재 등 위기가구: 가구당 양곡 20kg, 이불 1채, 생활필수품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외) 제3조제5호에 따른 화재 등 위기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 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요청서□ 화재 등 위기가구 지원 요청서

| ※ 위 해당되 | 는 구호에 | 체크(∨) 해주세요 | 5 | |
|---------------|---------------|------------------------------------|----------|-------------|
| | 성 명 | 생년 ⁴ (성 ¹ | | 전화번호 |
| 대 상 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 | 세대주 (가구수) | | 계좌번호 | |
| | ○ 저소득 | 위기가구 [제3 | 조 각 호에 해 | 당] |
| 지원요청 | - | | | |
| 내 용 | ○ 화재 등 | · 위기가구 [제3 | 3조제5호에 하 | [당] |
| | _ | | | |
| | | | ` | □ 있다 □ 없다) |
| 신청여부 | ※ 지원내 | 용 있을 경우 기 | 재: | |
| <현장확인 l | 내용> | | | |
| | | | | |
| 위와 같이 | • | <u>위기가구</u> 위기가구 지원 | 을 요청합니다 | ł. |
| | | 20 년 | 월 일 | |
| | | 지원대상자 | 확인: 〇〇〇 |) (서명 또는 인) |
| | | | | 읍면장(직인) |
| 해 남 군 | · 수 귀하 | | | |
| 구비서류 | | 보 동의서 1부. 보수집 및 이용 -본 1부. | -동의서 1부. | |

(별지 2호서식)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해남군 복자사각자대 위기가구의 | 수급자격 종료 후 |
| 계좌번호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집 |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소득수준, 가구유형, 급여유형, | 해남군 복자사각자대 위기가구의 | 수급자격 종료 후 |
| 민간자원지원여부, 기족관계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집 |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 <i>주민등록번호</i> | 해남군 복자사각자대 위기기구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집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보호자 연락처 | 해남군 복지사각자대 위기가구의 지원 | 수급자격 종료 후 |
| | <i>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집</i> |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제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의결된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조례 제3120호 붙임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책 임행정의 수행으로 신뢰받는 해남군의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 2. "민원인"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오기·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 인이 받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민원보상금)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 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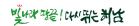
- 1. 해남군 관내에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0,000원
-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000원
-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0,000원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한다.
 -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증명·교부되어 재 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 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두 번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 3. 그 밖에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6조(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특례) 이 조례에 의거 능동적·적극적으로 민원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은 행정신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에 정상참작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 불편확인서

| | 성 | | 명 | 생년월일 성 별 |
|------------------|---|---|---------------|-----------------------------|
| 민 원 인 (신 청 인) | 주 | | 소 | |
| (| 연 | 락 | 처 | |
| | 유 | | 형 | 착오행정(), 지연처리() |
| | 민 | 원 | 명 | |
| 불편내용 | 내 | | as | (착오 및 지연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
| 기타의경 | | | | |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부스 | 너 명 | |
|--------|-----|-----|------|
| 담당자 | 직급(| 직위) | |
| | 성 | 명 | (서명) |
| なしのフラン | 직 | 위 | |
| 확인자 | 성 | 명 | (서명) |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지급대장

| 연번 | 지 급 | | 지급대상자 | | 지급사유 | 지급액 | 지급 | 유형 | | 결 재 | | 비고 |
|----|------------|-----|-------|-----|-------------|-----|-------|----|-----|-----|----|----|
| 선빈 | 지 급 연월일 | 성 명 | 주소 | 연락처 | (착오 및 지연내용) | (원) | 상품권 등 | 현금 | 담당자 | 팀장 | 과장 | 비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조례 제3121호 붙임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출퇴근,"을 "출퇴근, 유연근무"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을 "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10시부터 오전 6시"를 "9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8조의3 중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후단 중 "지급할수"를 "지급할 수"로, "없다"를 "없으며, 연가보 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 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공제하지 않는다"를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질병 또는 부상"을 "부상 등"으로, "요하는"을 "필요할"로,

"<mark>6월</mark>"을 "180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제22조제2호 중 "검찰"을 "검찰, 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 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를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를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산·사산"을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 본문 중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제23조제14항 중 "1일"을 "1일, 퇴소 당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5항) 제1호 중 "(이하"를 "(이하 이 항에서"로,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휴업·휴원·휴교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 담에 참여하는 경우
-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 (b)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①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 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 (B)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 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재난 · 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선거업무 종

사 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같은 연도 내 제21조의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 인 경우
- 2. 같은 연도 내 제21조의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 인 경우
-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 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② (생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② (현 행과 같음) 략) (3)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1.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 ----- 출퇴근, 유연근무 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생 략) 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 (2) ----의하여 ----일 또는 공휴일에는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 ----.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 43 -

할 수 있다.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

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u>아니</u>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u>오전 6시</u>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u>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u>아니</u>
 <u>한</u>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8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 제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원이 따른 시간선택제원이 따른 시간선택제원이 따른 시간선택제정공무원 및 같은 영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제18조제1항,제19조의3제1항·제2항,제21조,제23조제4

| ③ | |
|--------------------|-------------|
| | |
| | |
| | |
| 전 8시 | |
| | |
| | |
| 않다. | <u>그렇게</u> |
| 년다. 1. (현행과 같음) | |
| 2 | - 않은 |
| | <u> </u> |
| | |
| 제18조의3(시간선택제- | 공무원 등 |
| 에 대한 휴가에 관한 | 특례) |
| | |
| | |
| | |
| | <u>같은 영</u> |
| 제3조의5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항·제16항 및 제24조에도 불구 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조 ④ (생 략)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u>없다</u>.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경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u>지급할 수</u> 없으며, 연 |
| 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
|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
|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 |
| 지 않고 이월 • 저축한다. |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 |
| |
| |
| |
| |
| |
| |
| |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u>공제하지 않는다</u>.

② ~ ⑦ (생 략)

제21조(병가) ① (생 략)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u>요하는</u> 경우에는 연 <u>6월</u>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 적 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u>검찰</u>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때
- 3. ~ 10. (생략)
-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1 따른 <u>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u>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 <u>근지역</u>으로 공무국외출장, 파 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

|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 |
|----------------------------|
| 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 |
| 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세21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u> 부상 등</u> |
| 필요할 |
| <u>180일</u> |
| |
| ③ (현행과 같음) |
| 세22조(공가) <u>소속기관의 장은 소</u> |
| 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 |
| 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 |
| 가로 허가해야 한다. |
| 1. (현행과 같음) |
| 2 <u>검찰,</u> |
| <u> 경찰</u> |
| |
| 3. ~ 10. (현행과 같음) |
| 11 |
|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 |
| <u>관리지역</u> |
| |
| 같은 법- |



해 <u>같은 법 제2조제1호</u>에 따 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생 략)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 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 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 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 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 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 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 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 음)

| ② |
|---------------------------------|
| |
| |
| |
| |
| |
| |
| <u>60일)이</u> |
| <u>60일)이</u> <u>상이 되게 해야</u> |
| <u></u> |
| <u></u> |
| <u></u> |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u>유산·</u>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③ ~ ⑤ (생 략)
- ⑥ 삭 제
- ⑦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 사용 시 사전에 복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잔여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 1. · 2. (생략)
- 3. 30년 이상: <u>15일</u>
- 8·9 삭 제
- ①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 <u>जॅो ०</u> |
|------------------|
| 1. • 2. (현행과 같음) |
| 3 <u>유산·사</u> |
| 산 또는 조산(早産)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⑦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 <u>20일</u>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 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①·① (생 략)

<신 설>

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 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 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 치료시술휴가-----

----. <단서 삭제>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

<신 설>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u>1일</u>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5)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u>2일(자녀가 2명 이상</u> 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 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 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 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 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 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14) ---------- 1일, 퇴소 당 일----.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시험 당일 1일 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공<u>무원</u>----------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휴가-----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 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 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1 6]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 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 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1 7]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 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 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 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18] 소속기관

----(이하 이 항에서 ------- 휴업·휴워·휴교 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 야 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 우

의 장은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선거업 무 종사 등 군정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 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u><신 설></u>

<신 설>

<신 설>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 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 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 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 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 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①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 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 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 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 으로 한다.

⑧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9)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 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제24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u>아니한다</u>. <u>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후단 신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
| 제24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
| 공휴일) |
| |
| 않는다. <단서 삭제> |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을 산입한다. |
| <u>트 트립트 1.</u> 1. 같은 연도 내 제21조의제1항 |
| 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 |
| 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 2. 같은 연도 내 제21조의제2항 |
| 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 |
| |
| <u>간이 30일 이상인 경우</u> |
|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 |
| 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 |
| <u>인 경우</u> 4. 동일하 사유로 인한 특별휴 |
| 4. 중달ਈ 사파노 현양 국별유 |

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조례 제3122호

붙임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하 사항

-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해남군 대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 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23호 붙임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 3.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 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남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 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 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 2. 농업 관련 구인 · 구직 등록, 취업알선 · 연계
 -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 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 2. 농작업 안전물품
 -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 4.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5.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 6.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①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
 - 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1. 일손 부족 농가

- 2.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제9조(관리·감독)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주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조례 제3124호 붙임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기 중(방학 제외) 야간학습"을 "야간학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를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
| 선정)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 선정) |
|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 |
| 같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학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심 | 2 |
| 귀가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 | |
| 인하여 <u>별지 제2호 서식</u> 의 안 | <u>지 제2호서식</u> |
| 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 | |
| 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 |
|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제1호부터 <u>제3호까지의 규정</u> | 4 <u>제3호까지</u> |
| 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 | |
| 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 | |
| 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 |
| 수 있다. | |
|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
|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 ① <u>o</u> } |
| 학기 중(방학 제외) 야간학습으 | <u> 간학습</u> |
| 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 | |
| 우 이용할 수 있다.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 제6조(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
| 선정 및 지정 취소) ① 안심귀 | 선정 및 지정 취소) ① |

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u>별지 제3호</u> <u>서식</u>의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사 업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u>별지 제4호</u> <u>서식</u>의 안심귀가택시 운행일지 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 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생 략)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생 경략)

- ② 이용학생은 <u>별지 제5호 서식</u>의 안심귀가택시 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u>별지 제3호서식</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3 |
| |
| 별지 제4호서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세7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현 |
| 행과 같음) |
| ②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2. 2. 18.)에서 의결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조례 제3125호

붙임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레 전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소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 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규 | 칙 |
|---|---|
| | |
| | |

제2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2. 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해남군수 ____

해남군 규칙 제1345호

붙임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1. 의 가목의 1)을 삭제하고, 6. 의 가목 중 "7,000원"을 "8,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4 | 별표 4 |
| 1. 지도수당 | 1. 지도수당 |
| 가. 내부강사(학습지도 수당) | 가. 내부강사(학습지도 수당) |
| 1) 방송(자율학습 등)수업: | 1) (삭 제) |
| 20,000원 이내/1시간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6. 훈련 및 대회 출전에 따른 | 6. 훈련 및 대회 출전에 따른 |
| 식비 등 기준 | 식비 등 기준 |
| 가. 식비: 1인 1식 7,000원 | 가. 식비: 1인 1식 8,000원 |
| 나. ~ 다. (생 략) | 나. ~ 다. (현행과 같음)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 |

공 고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2-13호

해남군의회 공인 등록 공고

「해남군의회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공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함.

2022. 2. 16.

해남군의회의장



- 1. 공고사유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등록함
- 2. 신규 직인의 최초 사용시행일 : 2022. 2. 16.
- 3. 등록대상 직인
 - 해남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 공 인 명 | 인 영 | 규격(cm) | 보관부서 |
|------------------------|--|---------|-------|
|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 当代同党では、日本のでは | 3.0 정방형 | 의회사무과 |